



제417회국회(임시회)
제2차 국방위원회
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5·18조사위 수집·생산 기록물 이관〉

■ 민형배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0554호)

2024. 8.

국 방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류 승 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※ 참고자료	
1. 5·18위원회 기록물 이관 현황	5
2. 폐지기관 자료 이관 사례	6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민형배의원 등 16인
2. 발 의 일 : 2024. 6. 17.
3. 회 부 일 : 2024. 6. 27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가 수집·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·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·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.

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. 기록물 이관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이라는 별도의 ‘동의안’을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모호합니다. 더구나 5·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.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록물 이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.

이에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·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·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. 시민의 5·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,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(안 제57조제2항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(이하 “5·18 위원회”라 한다)가 수집·생산한 기록물을 5·18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5·18 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·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려는 것임.(안 제57조제2항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5·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) ① (생략)	제57조(5·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·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.	② -----수집하거나 생산한----- -----이후 5·18민주화운동----- -----5·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·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한다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- 현행법은 5·18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개정안은 5·18 위원회가 수집·생산한 기록물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5·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·18기념재단 등 특정기관으로 자동 이관하려는 취지이며, 5·18 위원회가 수집·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및 연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현재 동 기록물은 5·18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¹⁾ 규정에 의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며, 아직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잔여기록물 및 청산단 기록물 등은 2024년 9월 까지 이관이 완료될 예정임.²⁾³⁾

□ 기록물 이관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현행 규정(법 제57조 제2항)의 제정 배경은 기록물 중에는 공개가 곤란한 자료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관 이전에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음.

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5·18위원회가 생산·수집한 기록물 등은 일반 국가기록물과 달리 5·18기념재단 등 특정단체에게 모든 자료가 강제 이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기록물 관리의 원칙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.

1) 제25조(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)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.

2) <참고자료1> 5·18위원회 기록물 이관현황 참고

3)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국민에게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개·제공됨.

□ 개정안과 관련하여 5·18 위원회⁴⁾는 수집 기록물 등의 이관을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, 행정부 내부 절차 지연 및 위원회 활동 종료(2024년6월 26일)로 인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해당 기록물을 5·18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등으로 이관하지 못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며,

국가기록원은 국가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 소관기관⁵⁾ 및 민간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하는 것은 국가기록물 관리체계와 맞지 않고,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,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·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폐지된 위원회가 수집·생산한 기록물의 경우 국가기록원이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
02)6788-5307

4) 본 의견은 국가기관으로서의 5·18 위원회가 검토한 정부 의견이 아니라, 「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사무처(청산단)에서 검토한 의견임.

5) 5·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경우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소관 기관임.

※ 참고자료

1. 5·18위원회 기록물 이관 현황

□ 관련 근거

-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*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
※ 제25조(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)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

□ 기록물 이관 현황

- 이관 대상
 - 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, 도서, 대장, 카드, 도면, 신청각,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
- 이관 현황('24.5월 ~ 7월)
 - 전자 : '19.12월~'24.6월 온나라 약 **280G** 이관 완료
 - 비전자 : 사건조사기록물, 행정기록물, 자료실 소장자료, 시청각 기록물, 간행물 등 약 **5천여권**

□ 향후 이관 계획

- 위원회 잔여기록물 등 : 8월 4~5주 예정
 - 위원회 사건 및 행정기록물, 시청각기록물 등 잔여기록물 약 1천권
- 청산단 기록물 : 9월 3~4주 예정
 - 청산기간에 생산, 접수된 각종 행정 기록물

2. 폐지기관 자료 이관 사례

◇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

- 관련법령 : 「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
- 이관 대상 : 군 사망사고 사건조사 기록, 회의록 및 행정기록 등
 - 비전자기록물 : 총 3,701철 이관(5차례, '23. 7. 6. ~ 12. 8.)
 - 전자기록물 : 총 316철(107,121건) 이관('23. 7. 26. ~ 11. 29.)
- 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 내역 : 총 81회
 - 기관민원 : 63회(국방부, 국가보훈처 등 10개 기관)
 - 법원촉탁 : 5회(서울중앙지방법원, 대구지방법원 5회)
 - 정보공개청구 : 13회

◇ 가습기살균제사건과4·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
- 관련법령 : 「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」
- 이관현황 : 가습기살균제·세월호 참사 사건조사 기록, 회의록 및 행정기록 등
 - 비전자기록물 : 총 6,264권
 - 전자기록물 : 총 1,151권(61,915건)
- 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 관련 : 일반 국민의 경우 중앙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되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(서울·성남·부산·대전)에서 대응 중

◇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(1기)

- 관련법령 :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
- 이관현황 : 총 280,067권(212,281건)
- 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 관련
 - 제2기 진화위 출범 시 212천여건 중 약 115천건(13천여권) 제공

	합계	사건기록	수집자료	조사보고서	운영지원
합계	13,316	8,071	4,340	23	882
비전자기록물	10,817	6,173	4,338	23	283
전자기록물	2,499	1,898	2		599

- 일반국민의 경우 중앙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되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(서울·성남·부산·대전)에서 대응 중